

1. 개정 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3월 14일에 변경에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하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러목, 제4조제22호, 제7조제1항제12호, 같은조 제2항제16호, 제8조제12항, 제15조제21항, 제24조제21호, 제30조제3항제11호, 제37조제1항제17호, 별표 15의8, 별지 제24호의9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0서식 신설, 제30조)

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상용견품을 포함시킴.

나.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 반영(안 제15조 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함.

다. 중국과의 합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별지 제24호서식)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다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최대 20개)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계약당사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등 반영(안 제37조제1항제16호 신설, 제8조제11항제14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체화함.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90일로 함.

3)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산지소명서 서식 및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추가(안 제6조제1항 제3호 신설)

수입신고수리 전 사전 심사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0.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

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왕국의 영역

제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

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8조제1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15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생산지역(장소 및 우편번호)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및 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다.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 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 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 서식

제24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

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 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다.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제1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별표 2 제3호의 품목번호 8442.30의 원산지 인정요건 중 제2호의 “재료로부터”를 “재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품목번호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7301	
7302	
73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30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5	2.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외경이 19
7306	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41호의 것
7307	

별표 12 제3호의 품목번호 8007의 원산지 인정요건 중 제2호의 “물품으로부터”를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로 한다.

별표 15의8, 별표 20의3, 별표 2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6번란을 “6. Item number(Max 20)”에서 “6. Item numbe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6번을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에서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을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의8서식, 별지 제24호의9서식, 별지 제2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0조에 따라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한 사항이 발효되는 날
2. 제15조제20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4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의8서식, 별표 20의3, 별표 20의4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37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된 날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11항제14호의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8]
<신설 2022. 0. 0.>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이하 “채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 1) 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2) 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3) 2)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 4) 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덧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물품
- 5) 채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1)에서 4)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 6) 채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채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채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채약당사국 또는 그 채약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채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7) 채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채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8) 채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채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6) 또는 7)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 9) 우주에서 취득된 물품. 이 경우 이 물품은 그 채약당사국 또는 그 채약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채약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물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계약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물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1)부터 10)까지에 언급된 물품으로만 그 계약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조나호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조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다. 계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1), 2) 및 이 표의 다른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계약당사국에서 수출된 후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계약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된 계약당사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라목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나) 계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그 밖에 발생한 모든 비용(운송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너) 동물의 도살

2) 1)에서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3) 1)파)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1)너)에서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원산지물품을 다른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원산지물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생산한 다른 계약당사국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라도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1) 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도 그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한다.

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방법

-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직접법/직접법

$$\text{역내가치 포함비율} = \frac{\text{원산지 재료의 가격} + \text{직접 노무비} + \text{직접 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times 100$$

나) 간접법/공제법

$$\text{역내가치 포함비율} = \frac{\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times 100$$

- 2) 1)가)의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가치이다.
 - 나)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 다)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라)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3) 1)나)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그 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물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라.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결정

이 표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생산을 거친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재료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원산지 재료로 취급한다. 이 경우, 그 재료를 그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 중립재의 원산지결정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물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 1) 연료 및 에너지
- 2) 도구, 형판 및 주형
-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그 재료
-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7) 촉매제, 용제
-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

바.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결정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는 해당 재고관리기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사.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 1)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이하 이 표에서 “부속품 등”이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해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부속품 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며, 부속품 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가치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한다.

아.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 1) 물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 2)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물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 가) 그 물품이 제1호가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그 물품이 제1호나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다) 그 물품이 제3호에서 정한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나 가공 공정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 3)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물품의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란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2) “류”란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3) “호”란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4) “소호”란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 5)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2호다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6)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7)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8)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9) “완전생산기준”이란 제1호가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라도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세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이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 선택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라.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마.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HS 코드(HS 2017)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제1부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01			완전생산기준
02			완전생산기준

03			
	03.01		완전생산기준
	03.02		완전생산기준
	03.03		완전생산기준
	03.04		완전생산기준
	03.05		
		0305.10	완전생산기준
		0305.20	완전생산기준
		0305.31	완전생산기준
		0305.32	완전생산기준
		0305.39	완전생산기준
		0305.41	완전생산기준
		0305.42	완전생산기준
		0305.43	완전생산기준
		0305.44	완전생산기준
		0305.49	완전생산기준
		0305.51	완전생산기준
		0305.52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3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4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9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1	완전생산기준
		0305.62	완전생산기준
		0305.63	완전생산기준
		0305.64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1	완전생산기준
		0305.72	완전생산기준
		0305.79	완전생산기준
	03.06		완전생산기준
	03.07		완전생산기준
	03.08		완전생산기준

04			
	04.01		완전생산기준
	04.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는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		
		0404.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90	완전생산기준
	04.05		완전생산기준
	04.06		
		0406.10	완전생산기준
		0406.20	완전생산기준
		040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6.30호는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완전생산기준
		0406.90	완전생산기준
	04.07		완전생산기준
	04.08		완전생산기준
	04.09	0409.00	완전생산기준
	04.10	0410.00	완전생산기준
05			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6			완전생산기준
07			완전생산기준
08			완전생산기준
09			
	09.01		

		0901.11	완전생산기준
		0901.1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2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2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2		완전생산기준
	09.03	0903.00	완전생산기준
	09.04		
		0904.11	완전생산기준
		0904.1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4.21	완전생산기준
		0904.22	완전생산기준
	09.05		완전생산기준
	09.06		
		0906.11	완전생산기준
		0906.19	완전생산기준
		0906.2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7		완전생산기준
	09.08		완전생산기준
	09.09		완전생산기준
	09.10		
		0910.11	완전생산기준
		0910.12	완전생산기준
		0910.20	완전생산기준
		0910.30	완전생산기준
		0910.9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0			완전생산기준
11			
	11.01	11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1102.20	완전생산기준
		1102.90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3		
		1103.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3.2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4		
		1104.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4.22	완전생산기준
		1104.23	완전생산기준
		1104.29	완전생산기준
		1104.30	완전생산기준
	11.05		
		1105.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	완전생산기준
	11.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7		
		1107.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	완전생산기준
	11.08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9	1109.00	완전생산기준
12			완전생산기준
13			
	13.01		완전생산기준
	13.02		
		1302.11	완전생산기준
		1302.12	완전생산기준
		1302.13	완전생산기준
		1302.14	완전생산기준
		1302.19	완전생산기준
		1302.20	완전생산기준
		1302.3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1302.32	완전생산기준
		1302.39	완전생산기준
14			완전생산기준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			
	15.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3	1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5	15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6	15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0	15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		
		151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5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

			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류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5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		
		1517.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8	151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0	152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2	152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품			
16			
	16.01	1601.0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		
		16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3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4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4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3	16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		
		1604.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3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3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4.1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1605.6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3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			
	19.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3	19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		
		19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한국의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않는 한 최소허용기준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소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		
		19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			
	20.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		
		20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20.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		
		20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5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9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99	한국의 제2005.99.1000호: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소호: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6	2006.0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2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		
		2008.11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0802.4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		
		2009.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41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4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21.01		
		2101.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1.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9.02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09.02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101.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5	21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		
		210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제1212.21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			
	22.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		
		2202.1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9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0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03	22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		
		22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6	22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		
		22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및 제1302.19호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9	22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			
	23.01		
		230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4	23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5	23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		
		230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306.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7	230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8	230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는 체결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3.09		
		2309.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9.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			
	24.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24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40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33.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			
	42.01	420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		
		42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21	2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5	42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6	42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44.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5	44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	44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4	441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6	441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7	441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50.01	50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2	5002.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3	50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4	50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5	50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6	50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			
	51.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4	5104.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0	51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3	51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			
	52.01	52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3	52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			

	53.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5	53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1	53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			
	54.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5	54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6	5406.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			
	55.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7	5507.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			
	58.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3	58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5	58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8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9	5809.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1	58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			
	63.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8	630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9	6309.00	완전생산기준
	63.10		완전생산기준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68			
	68.01	680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		
		68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3	68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8	680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		
		6811.40	가. 그 밖의 시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71.01		완전생산기준
	71.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		
		71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7	710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9	71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1	71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72.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		
		7220.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7220.1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7220.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1	722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3	722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			

			40퍼센트 이상일 것
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			
	81.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		
		810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6	81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1	81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3	81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			
	83.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3	83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4	83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0	83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4			
	84.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		
		848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			
	85.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		
		85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		
		8508.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가. 가정용 진공청소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		
		8517.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1	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		
		851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		
		8519.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가.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		
		852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		
		8523.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		
		8525.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		

		8528.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1	가.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		
		8529.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		
		853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85.40		
		8540.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가.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가. 속도변조관 (klystron):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		
		854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		
		854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가.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			
	87.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1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2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3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4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		
		87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		
		8704.1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2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3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		
		870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가.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 4단위 세번변경기

			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1	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가.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2	871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			
	89.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7		
		8907.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90.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		
		94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1부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9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번호	HS 2002	상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3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6	3923.10	-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30	-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6.90	- 기타
11	6107.11	-- 면으로 만든 것
12	6107.1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6107.91	-- 면으로 만든 것
15	6107.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61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7	6108.21	-- 면으로 만든 것
18	61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9	61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6108.91	-- 면으로 만든 것
21	61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2	61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3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24	6114.20	- 면으로 만든 것
25	6115.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6	6115.20	-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7	6115.92	-- 면으로 만든 것
28	6115.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9	6115.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6117.1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4	6201.12	-- 면으로 만든 것
35	6201.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6	6201.92	-- 면으로 만든 것
37	6201.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8	6202.12	-- 면으로 만든 것
39	6202.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0	6202.92	-- 면으로 만든 것
41	6202.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2	62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43	62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4	6203.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5	62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6	6203.32	-- 면으로 만든 것
47	62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48	6203.42	-- 면으로 만든 것
49	62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62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	6204.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2	6204.12	-- 면으로 만든 것
53	62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	62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5	6204.32	-- 면으로 만든 것
56	62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7	62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	62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9	6204.42	-- 면으로 만든 것
60	62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	6204.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2	62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	62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4	6207.21	-- 면으로 만든 것
65	6212.10	- 브래지어
66	6212.20	- 거들과 팬티거들
67	6212.90	- 기타
68	6213.10	- 건이나 건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9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70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71	6401.91	-- 무릎을 덮는 것
72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73	6401.99	-- 기타
74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75	6402.19	-- 기타
76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6402.3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78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79	6402.99	-- 기타
80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81	6403.19	-- 기타
82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 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3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랫폼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84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85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86	6403.59	-- 기타
87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88	6403.99	-- 기타
89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	6404.19	-- 기타
91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2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93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94	6405.90	- 기타
95	6406.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96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7	6406.91	-- 목재로 만든 것
98	6406.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9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0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3] <신설 2022. 00. 0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²⁾) (location & postal code³⁾) preferential origin.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습니다. 2) 원산지 국가(한국 또는 이스라엘)를 적습니다.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를 적습니다.
국문본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세관인증번호...¹⁾)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²⁾)(장소 및 우편번호³⁾) 상품임을 신고한다.

- 1)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 2) 원산지국가,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
-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5쪽 중 제1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5.란 번호	
--------	--

8. 원산지증빙 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	--

10. 원산지		11. 기관명 및 종류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비국가기관(기타)	[] [] []
---------	--	--------------	--	----------------------------	-------------------

14. 총순중량	15. 적출국
----------	---------

19. 환적항		20. 환적일	
---------	--	---------	--

23. 원산지 인증 수출자번호		24. 협정국명	
---------------------	--	----------	--

28.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지 부가가치 역외공급	원산지료로만 결합기준 기타원산지기준	세번변경 특정 자율발급	경쟁기준 정기 급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87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쪽 중 제2쪽)

5.란 번호			
6.품명·모델·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9.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원산지			
11.기관명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12.발급·작성번호			
13.발급·작성일			
14.총순증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24.협정적용 순증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HS No.)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를만든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 율 발 급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를만든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 율 발 급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를만든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 율 발 급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레
1.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1234-56-7890123-
2.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통상(주) - 홍○○ - △△도 □□시 ○○구 ○○로 123 - 02-1234-5678 - 02-2345-6789 - ○○○@abcd.com - 123-45-6789 - ○○통상1234567
3.수출자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Jhon △△ - 12 ○○○○ Road #10 □□□□ Singapore - 이스라엘의 경우 : 1234567 - 68-1234-5678 - 68-1234-5679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4.생산자	○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AI △△ - 123 ○○○○ Road #12-34 □□□□ Singapore - 이스라엘의 경우 : 1234567 - 68-1234-9876 - 68-1234-9875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5.란 번호	○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읊지에 기재합니다.	- 001, 002, 003, ..., 999
6.품명·모델·규격	○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모델·규격을 기재합니다.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 "√"를 기재합니다.	- 2016/07/01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9.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	○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원산지	○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 로 기재 가능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11. 기관명 및 종류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 "√"를 기재합니다.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 기관종류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12. 발급·작성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특수문자('·' , '/' 등)는 생략합니다.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 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 VN-KR/02 71인 경우: 'VNKR0271' 'VNKR0271(20160701)' 'VNKR0271(2016070102)'
13. 발급·작성일	○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4. 총순중량	○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100kg
15. 적출국	○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16. 적출항	○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Singapore
17. 출항일	○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8. 환적국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19. 환적항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20. 환적일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21.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여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VN'
22.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JP'
23.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 등)는 생략합니다. * 빈칸은 제거합니다. (불러서 기재)	- IT-001-○○123인 경우: 'IT001○○123'
24. 협정적용 순중량	○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율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는 경우: 500kg
25. 분할차수	○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 2회차 분할신고시: 2
26. 품목번호 (HS No.)	○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27. 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을 수입한 경우: 0.0(FSG)

28.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함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원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함기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율발급 []
-------------	--	---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 품목번호(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선인도가격(FOB) []	6. 원산지결정기준	
	금 액		7. 자유무역협정명칭	
8. 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5. 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9.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0. 결합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1. 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2.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 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 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I)		28.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 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해당(Y)	미해당(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〇〇세관장(〇〇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ng ◯◯-1234 ; ◯◯ TV
4.품목번호(HS No.)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5.물품가격	○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6.원산지결정기준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가. 완전생산 물품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기재방법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바. 특정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아. 기타기준
기재방법	○ 결합기준 기재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 BU 30% + SP
	7.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품목번호(HS No.)
	○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12.원 산 지
	○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공급자(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5.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 ○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 제26란부터 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6.수출 대상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으로 기재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 제27란을 “해당(Y)”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 수출물품에 대한 제19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0.RCEP 원산지 국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3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13.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여부 (Simple Declaration of Origin)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14. 공급물품 연번 (S/N)	15. 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16.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발생(Y)	미발생(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내 용																																		
1.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급하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등																																		
6. 품목번호(HS No.)	○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확인인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산지결정기준</th> <th>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td> <td>- PE</td> </tr> <tr> <td>다. 세번변경기준</td> <td></td> </tr> <tr> <td>- 2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C</td> </tr> <tr> <td>- 4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H</td> </tr> <tr> <td>- 6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SH</td> </tr> <tr> <td>라. 부가가치기준</td> <td></td> </tr> <tr> <td>-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td> </tr> <tr> <td>-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U</td> </tr> <tr> <td>-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td> <td>- MC</td> </tr> <tr> <td>-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NC</td> </tr> <tr> <td>마. 결합기준</td> <td></td> </tr> <tr> <td>-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 </tr> <tr> <td>바. 특정공정기준</td> <td>- 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OP</td> </tr> <tr> <td>아. 기타기준</td> <td>- Other</td> </tr> </tbody> </table>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을 기재합니다.																																		
1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예) 한국산인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 중국산인 경우 "CN" 또는 "중국"으로 기재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8.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13. 원산지기간이 확인 물품 여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기간이 확인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기간이 확인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을 기재합니다.																																		
※ 제14란부터 제16란까지는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4. 공급물품 연번	○ 제5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4란의 연번을 이 란에 기재합니다.																																		
15. 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 수출물품이 제약상대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6.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수행 여부	○ 수출물품에 대한 제9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2. Certificate no.		
3. Importer (name, full address, country)			4. Country of Origin		
5. Port of shipment and Transport Details (Optional)			6. Country of destination		
7. Observations			8. Commercial invoices		
9. Description of goods					
No.	Tariff item number	Description of the goods	Origin Criterion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ORIGIN CERTIFICATION					
10. Declaration by: ☐ The Producer ☐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i>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i> Date: Signature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i>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i> Date: Stamp and signature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전자 및 종이 원산지증명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증명서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제3란에는 최종 목적지국 상품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known” 이라고 적습니다.
- 제4란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명을 적습니다.
- 제5란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선적항을 적습니다.(해당란은 선택 기재사항입니다.)
- 제6란에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인 국가명을 적습니다.
- 제7란에는 제2사본(해당 시 “DUPLICATE” 기재), 소급발급(해당 시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역외 가공에 대한 언급(해당 시 “OUTWARD PROCESSING” 기재), 생산 지역(장소 및 우편번호¹⁾) 등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송장의 번호를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란에 “Unknown” 이라고 적습니다.
- 제9란에는 이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적습니다. “No.” 란에는 상품의 연번을 적고, “Tariff item number” 란에는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Origin Criterion” 란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고,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란에는 총 중량 또는 상품의 그 밖의 모든 수량 단위를 상세히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HS 품목번호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실제 품목분류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가. 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SR”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OP”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원산지 기준과 실제 원산지 기준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 제10란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 란에 “√” 표시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란에 “√” 표시합니다.
- 제11란에는 증명기관인 세무사함을 기재하고, 그 기관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습니다.

1. 원산지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
(Additional Page)

Certificate no :

9. Description of goods

No.	Tariff item number	Description of the goods	Origin Criterion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ORIGIN CERTIFICATION

10. Declaration by:

- ☐ The Producer
☐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

Date:

Signature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Date:

Stamp and signature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DUPLICATE/TRIPPLICAT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of Origin No.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C Issued in (Country) See Overleaf Notes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5. For Official Use			
Departure date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Vessel's name/Aircraft etc.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Port of Discharg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9.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10.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3.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4. ☐ Third Party Invoicing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캄보디아와의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한국·캄보디아 양 당사국에 적용됩니다.
-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제3.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아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산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제6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7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포장의 표시와 번호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포장의 개수 및 종류·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6자리)를 적습니다.
-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CTC”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RVC %” (예: “RVC 45%”)
-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CTH + RVC %”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Specific Processes”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Article 3.5”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제12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Third Party Invoicing”에 “√”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을 해당 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Declaration of Origin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code:			Referenc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Telephone:		Fax:		E-Mail: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4.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invoice number, quantity)	5. HS Tariff Classification #	6. Origin Criterion	7. Producer	8. FOB value only when the RVC criterion is used	9. Country of Origin
10. Observations/Finding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7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영문으로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증명서의 고유한 참조번호를 적습니다.
- 제2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 로 기재하고, 제4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제3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4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의 수량을 포함하여 상업 송장에 기재된 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5란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6란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CTC” “RVC %” (예: “RVC 45%”) “CTH + RVC %”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Specific Processes”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Article 3.5”

- 제7란에는 수출자가 제4란의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 라고 적습니다. 수출자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 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1)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2)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확인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 제8란에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기재합니다: 한국(KR), 캄보디아(CA)
- 제10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사전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 더.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u>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u> <u>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왕국의 영역</u> 2. ~ 16. (생략)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1. (생략) <신설>
	2.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 -----. 1. ~ 21. (현행과 같음) 22. 「 <u>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u> 」(이하 “ <u>캄보디아와의 협정</u> ”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2. (생략) <신설>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 후에 <u>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신설>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u> ②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u>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신설>

	<u>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⑩ (생략)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⑪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u> <u>물품: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 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u>	14. <u>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u> <u>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u> <u>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u> <u>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u>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⑫ <u>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u> <u>물품: 캄보디아 상무부</u> 2. <u>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u> <u>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u>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 ----- ----- ----- ----- ----- -----.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u>모사전송번호</u>	1. ----- ----- <u>팩스번호</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⑲ (생략)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⑲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⑳ <u>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u>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 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생산지역(장소 및 우편번호)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및 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다.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

<신 설>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 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 서식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illegible]

